

「2022년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포항시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2년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32명 ※ 포항시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포항시 관내 소재한 제조업 중소기업 중 2022년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2021. 12. 31. ~ 공고 시점까지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률이 증가한 제조기업에 한함

※ 2022. 1. 1. ~ 신청기간 내 신중년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

※ 연령기준: 만 40세 이상(1982. 01. 01.) ~ 만 65세 미만(1957. 01. 01.)(2022년 1월 1일 기준)

■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의 신중년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인건비 지원(최대 10개월 간)

※ 최대 2인 이내, 1인당 연 2,400만원 이상 급여(세전) 지급 조건

※ 월 급여의 40% 지원(참여 업체에 지원), 월 급여의 60% 이상 기업에서 부담 필수

2 신청 자격

1. 참여기업 자격요건(모두충족)

- ①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가동중인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2021. 6. 9시행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②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 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업소가 표기된 기업
③ 전년도말 대비(2021.12.31.)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률이 증가한 중소기업
④ 1기업-1지원 :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및 상습임금체불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사업장
-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른 근로자 고용 사업체
-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 기타 신중년근로자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주요 지원요건

- 2022. 01. 01. ~ 신청기간 내 신중년근로자 채용 완료 후 고용유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사회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
- ※ 참여신청서 기재사항과 기업 이행사항이 다를 경우(낮은 임금지급 등)
지원 제한

2. 참여 신중년근로자 자격요건(모두충족)

- ① 승인된 기업에 신규 채용된 신중년근로자(만 40이상 ~ 만 65세 미만)
※ 연령기준: 만40세 이상(1982.01.01.) 만65세 미만(1957.01.01.) (2022년 1월 1일 기준)

-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입사자
③ 지급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시인 자

○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반복참여자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수혜) 자
(참여기업이 별도 선발·관리하는 인턴 및 기타 유사한 형태 사업에 선발중인 자)
-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
※ 단, 1개월 이내로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3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2. 4. 25.(월) ~ 2022. 4. 29.(금)
- 신청인원 : 1개 사업장 당 최대 2명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선착순)
- 접 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 신청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1
-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고)
 -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확인서(서식2)
 -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서약서(서식3)
 -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시설 면적500㎡미만)
 - 재무제표(최근 2년간, 홈택스발행)
 - 사회보험(고용보험 포함)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가입내역 (2021. 12. 31.일자)
 - 개인별 근로계약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외국인등록증사본(외국인 근로자에 한함)

4 선정 및 기타사항

- 선정기준 : 사업공고일 이후부터 신청·접수순으로 결격사유 심사 후 선정
- 선정통보 : 2022. 5월 중 개별 통보 예정

■ 향후일정 : 선정통보 후 분기별 지원금 지급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함